고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2711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11. 17. 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11. 20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3. 11. 28.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· 원안가결

2. 개정이유

군수 읍·면소통간담회('23년 2월) 시 하일면 주민의 분반 신청사항 반영 및 행정구역(반) 재정비를 통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 아울러, 행정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고성군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(별표) 신설

- 622개 반(기존)→ 630개 반(개정)

구분			조정전		증감		조정후	
읍면	행정리	사유	마을	반	마을	반	마을	반
고성군				622		+8		630
고성읍	외우산	분반	1	3	-	+1	1	4
삼산면	용호	분반	1	3	-	+2	1	5
하일면	동화	분반	1	4	-	+1	1	5
개천면	차치	신설	1	0	-	+1	1	1
개천면	월곡	신설	1	0	-	+1	1	1
구만면	신계	신설	1	0	-	+1	1	1
구만면	선동	행정누락분	1	0	-	+1	1	1

나. 상위법 준용 법률 조항 수정

-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→ 제7조제6항

다. 현실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실제 미운영 위원회 부분 삭제

- “리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” 삭제

라. 행정제도 개편사항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: 제3조, 제7조

1) 가구 → 세대

2) 공지사항의 주지 → 공지사항 전달

3) 대행정 여망사항 → 주민의 다수 의사로 결정할 사항

4) 주민자치회 → 반상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지방자치법」 제7조(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 등의 명칭과 구역)

2)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4(알기 쉬운 법령 정비 등의 마련)

나. 예산조치: 반장 정수 증가에 따른 연 400천원 소요

다. 합 의

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
· 해당사항 없음: 복지지원과-37567(2023. 9. 26.)호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: 고성군공고 제2023-1496호

가) 예고기간: 2023. 9. 27. ~ 2023. 10. 17.(20일간)

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4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5. 전문위원 검토요지

○ 주민 건의에 따른 분반 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던 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○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.

- 목적(안 제1조)

◦ 상위법 준용 오류 수정: 「지방자치법」 제7조제5항 → 제7조제6항

▸「지방자치법」 제7조제5항: **행정동**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**통 등 하부 조직**을 둘 수 있다.

▸「지방자치법」 제7조제6항: **행정리**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**하부 조직**을 둘 수 있다.

- 반 설치기준(안 제3조)

◦ 별도의 정의가 없고 실제 적용 사례도 없는 “도시지역”에 대한 반 설치 기준의 삭제는 적정한 것으로 보임.

◦ **공동주택**의 경우, 동 단위 또는 공동주택 단위의 자치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행정 홍보와 참여의 장으로 변화 운영하기 위한 ‘세대수’ 또는 ‘동 단위’의 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.

- 반 명칭 및 관할구역(안 제4조)

◦ 미운영하여 실효성이 없는 “리개발위원회 심의”삭제는 적정한 것으로 보임.

◦ 하일면 동화리 동화마을 분반, 개천면 가천리 차치마을 반 신설 등을 반영, 고성군 630개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별표로 신설 규정함.

- 용어 정비

◦ 순화 또는 적정 용어로 대체할 필요성이 있는 “가구, 주지(周知), 대행정 여망사항, 주민자치회”를 “세대, 전달, 주민의 다수 의사로 결정할 사항, 반상회”로 정비하였음.

○ 상위법령 검토 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,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의 의사 결정 최소 단위로 기능할 수 있는 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.

6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7. 토 론 : 없음.

8. 심사결과 : 2023. 11. 28. 원안가결